

#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 경과

- 제 출 : 2007. 11. 27.(사천시장)
- 회 부 : 2007. 11. 27.(총무위원회, 의안번호 제80호)
- 상 정 : 2007. 12. 05.(제11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, 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총무과장 엄정기)

### 가. 제안이유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인의 날이 매년 5월 20일로 제정(2007.5.17, 법률 제8442호)됨에 따라 이에 부합코자 조례에 명시된 세계인의 날을 변경하고, 세계인의 날 행사주관과 관련 미흡한 부분을 개정코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매년 5월 21일로 규정된 세계인의 날을 매년 5월 20일로 개정함(안 제14조제1항)
- 2) 세계인의 날 행사 주관과 관련 예산의 범위안에서 식사제공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(안 제14조제3항)

### 다. 관계법령

-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

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진기)

- 개정조례안은 「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」이 국회 의결과정에서 부분의날과 중복되어 매년 5월 20일로 수정 의결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세계인의 날을 변경하고, 세계인의 날 행사 주관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.

○ 주요내용으로

- 매년 5월21일로 규정된 세계인의 날을 5월20일로 변경하고,
- 세계인의 날 행사 주관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사제공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검토의견으로

- 세계인의 날은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며,
- 세계인의 날 행사시 증식제공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행사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내 늘어나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.

※ 참고사항

- 관내 거주외국인 등록 현황(2007. 10. 31. 현재)
  - ▷ 계 : 1,147명(남 741명, 여 406명)
-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어 세계인의 날 행사시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위원	질의 내용	답변자	답 변 요 지
이정희 위원	○ 현행 조례로도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는 식사나 기념품의 제공이 가능한데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?	총무과장 엄 정 기	○ 세계인의날이 포함된 1주간 각종 행사를 시주관으로 할 경우를 대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## 5. 토론요지

토론자 (발언자)	토 론 (발 언) 내 용	비 고
이정희 위 원	0 민간단체 위탁운영시 식사와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굳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설명되어야 할 것임.	

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7. 소수의견 : 조례 제14조제3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의견이 있었음(개정 반대)